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구비서류 안내문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기한	2022년 04월 15일(금) ~ 04월 20일(수) 16시 도착분까지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견본주택 방문접수
수신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4-15(대표번호 : 055-362-5001)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li> <li>•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ul>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 공급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인터넷청약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청약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 및 부양가족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생애 최초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입증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2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715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li> <li>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가,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생애최초 소득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li> <li>※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li> <li>※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li> </ul>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li> <li>※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호봉인 자신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li> </ul>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li> <li>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li> </ul>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li> </ul>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사본)</li>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li> </ul>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ul>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사본)</li> <li>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li> <li>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li> </ul>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등기부등본(사본)</li> <li>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li> </ul>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li> <li>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직인날인)</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li> </ul>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li> <li>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li> </ul>		- 해당직장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서(건본주택에 비치)</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li> </ul>		-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2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이며 제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제외)

※ 상기 서류 외 당첨자자격인증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